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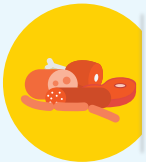
해외여행 축산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해외여행에서 귀국 후 **5일간**
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

해외여행 시 축산농가, 가축시장 방문 및
동물이나 동물분변과의 접촉을
자제합니다.



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, 햄, 소시지 등
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.



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**바로 세탁**하여
주시고, 샤워 등 **개인위생관리**에도 철저를
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관계자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에 등록하세요.

-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KAHIS에
직접 등록(www.kahis.go.kr) 하여 방역·검역 정책
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KAHIS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의 「축산관계자 등록」 메뉴 이용
- 축산관계자 정보 KAHIS 등록 문의전화 : 070-7510-3703



축산관계자
출입국신고
대표전화

1670-2870

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(울곡동960)



농림축산검역본부
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

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안내

2017.6.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축산관계자는 '17. 6. 3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*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○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**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확인 방법

- 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의 <축산관계자 출국신고> 메뉴에서 확인
-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 문의

출국신고 방법 (꼭 출국 전에 신고하세요!)

- 출발하는 공항·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
- 검역본부 홈페이지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* 접속
* 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 접속 → 중앙의 「동물」 메뉴 → 「축산관계자 출국신고」 클릭
- 출국장 내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 이용
- 스마트폰 이용 (2017년 5월부터)
* 접속 주소 : eminwon.qia.go.kr/m

입국신고 방법

- 도착하는 공항·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받음

축산관계자의 범위

1.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소, 산양, 면양, 돼지, 닭, 사슴, 오리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 사육	6.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, 동물용의약품 제조·수입판매업·도매업자와 고용된 자
2.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*	7.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 제조·판매업자와 고용된 자
3. 수의사 동물병원 종사자, 수의·축산 관련 공무원·교수·강사·대학원생, 공중방역수의사, 기타 수의·축산분야 종사자	8.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는 자
4.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	9.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협이 개설·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
5.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자	10. 원유를 수집·운반하는 자
	11. 도축장의 종사자

* 동거가족 :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
(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)

공항만 출국 및 입국신고 문의



인천공항	032) 740-2660~1
김해공항	051) 971-1925
김포공항	02) 2664-2601(0601)
대구공항	053) 982-5096
무안공항	062) 975-6030
청주공항	043) 263-4218(4219)
제주공항	064) 746-0761
양양공항	033) 635-9125



부산항	051) 600-0424
인천항	032) 722-8237
동해항, 속초항	033) 635-9125
군산항	063) 460-9430
평택항, 대산항	031) 8053-7707~9
광양항	061) 798-4921
제주항, 강정항	064) 728-5350



port